

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

1. 제 출 자

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20일 이천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음.

2. 근거 규정

-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월 승인이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

3. 제안 이유

- 읍·면·동 기능 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 기구인 주민지원과의 존속 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되어,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지원과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4. 주요 골자

- 한시 기구인 주민지원과 존속기한 연장
- “2002년 12월 31일”을 “2004년 6월 30일”로(안 부칙 제2조)

5. 검토 의견

-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, 200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된 주민지원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시키고자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개정안으로,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